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37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

려는 것임.

법률 제 호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1조(「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2조(「한국국제교류재단법」의 개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p> <p>1. (생략)  <u>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 되지 아니한 자</u>  3. ~ 6. (생략)</p>	<p>제6조(결격사유) -----  -----  -----  -----.  1. (현행과 같음)  &lt;삭 제&gt;  3. ~ 6. (현행과 같음)</p>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p> <p>1. ~ 3. (생 략)</p> <p>4. <u>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u></p> <p>5. · 6. (생 략)</p>	<p>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5. · 6. (현행과 같음)</p>